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마이애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마이애셋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i.co.kr](http://www.mai.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1년 3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1년 5월 4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 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모집(매출) 총액]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mai.co.kr](http://www.mai.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책임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 IV.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 칭

명칭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94920)									
종류형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4070	19053	94921	94922	94923	94924	96567	94925	94926	94927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

- 주 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분류 :

- ①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②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③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 ④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 ⑤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마이애셋자산운용(주)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주 1) 상기의 투자대상은 투자대상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권 등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성장주, 전환주, 기대주 등 세 분야에서 스타가 될만한 국내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스타 성장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 업종 대표주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기업에 투자

■ 스타 전환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 업황 및 기업 실적이 호전되거나, 사업구조 전환으로 턴어라운드될 기업

■ 스타 기대주의 발굴과 운용전략

: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 [참고]

☞성장주: 업종 대표주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법인의 주권

☞전환주: 업황 및 기업 실적이 호전되거나, 사업구조 전환으로 턴어라운드될 법인의 주권

☞기대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2) 제반 운용규정 및 투자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사전적 운용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장동향 및 종목별 거래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자산 건전성 제고

3) 참고지수(벤치마크) : KOSPI 90% + CD 금리 10%

- 주 1) 상기의 참고지수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주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참고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고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고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참고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주권 및 채권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권 및 채권 등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권 및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채무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노출되면서

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6. 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김준기	1966	자산운용본부 본부장	-	-	- 1999 ~ 2008 한화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 2008 ~ 2010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팀장 - 2011 ~ 현재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주2) 기준일: 2011.05.03.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단위:%)

펀드명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최초 설정일
	2010/01/17 ~2011/01/16	2009/01/17 ~2011/01/16	2008/01/17 ~2011/01/16	2006/01/17 ~2011/01/16		
투자신탁(전체)	40.37	74.16	31.17	24.61	24.61	2006/01/17
종류 A	38.08	71.69	29.93	23.91	23.91	2006/01/17
종류 A-e	-	-	-	-	38.02	2010/01/19
종류 C1	37.41	-	-	-	33.26	2009/08/13
종류 C-e	37.82	-	-	-	34.38	2009/07/29
비교지수	21.7	32.7	7.32	8.09	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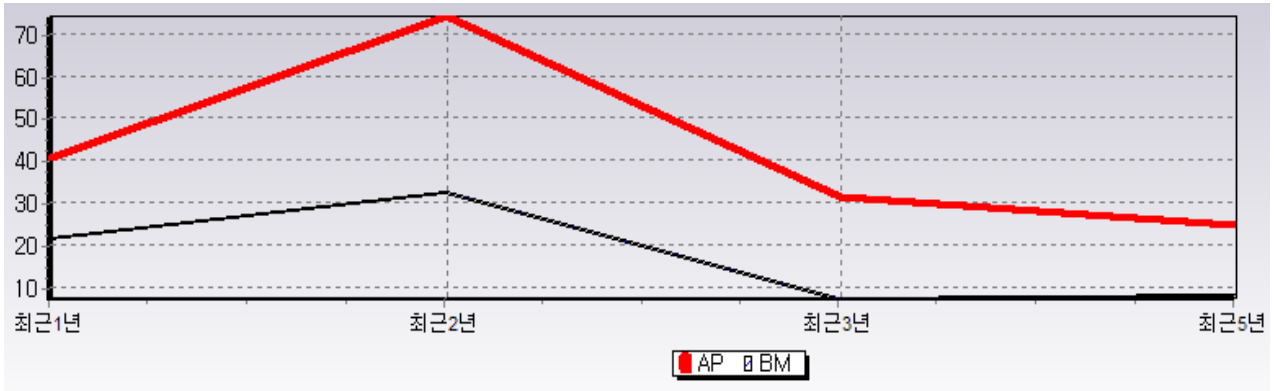
주 1) 참고지수 : KOSPI 90% + CD 금리 10%

주 2) 집합투자계약 부칙(4) 제 2 조에 의거하여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률로 기재하였습니다.

주 3) 상기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상기 수익률은 2011년 1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상기 그래프는 전체 클래스 중에 대표 클래스인 종류 A 수익증권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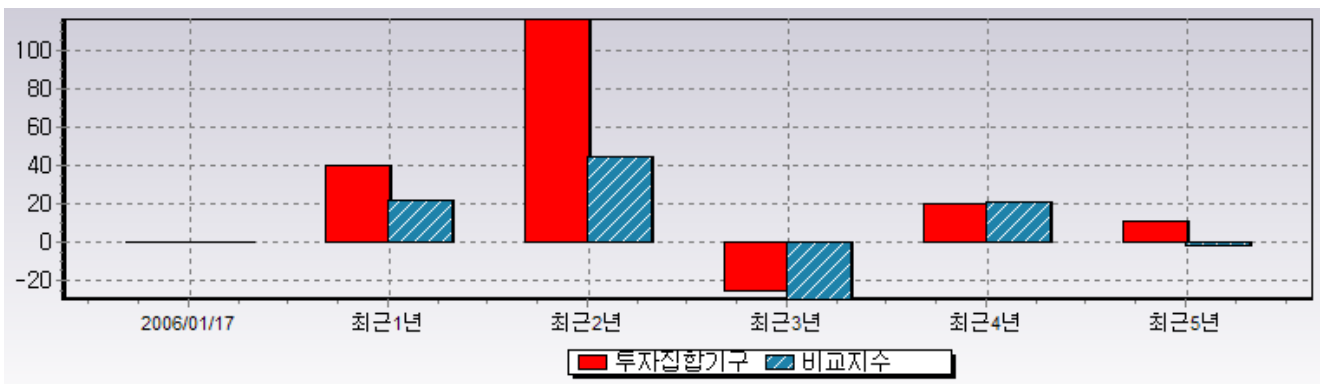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최초설정일
	2010/01/17 ~2011/01/16	2009/01/17 ~2010/01/16	2008/01/17 ~2009/01/16	2007/01/17 ~2008/01/16	2006/01/17 ~2007/01/16	
투자신탁(전체)	40.37	116.07	-25.54	20.18	10.78	2006/01/17
종류 A	38.08	113.49	-25.54	20.18	10.78	2006/01/17
종류 A-e	38.02	0	0	0	0	2010/01/19
종류 C1	37.41	9.72	0	0	0	2009/08/13
종류 C-e	37.82	12.07	0	0	0	2009/07/29
벤치마크	21.7	44.69	-29.79	21.12	-1.45	

주 1) 참고지수 : KOSPI 90% + CD 금리 10%

주 2) 집합투자규약 부칙(4) 제 2 조에 의거하여 종류형 수익증권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종류 A 수익증권의 수익률로 기재하였습니다.

주 3) 상기 수익률은 과세 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상기 수익률은 2010년 1월 16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연판매보수(CDSC)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투자신탁**으로 수익자의 전환 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 투자신탁의 최초 가입 시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자세한 적용기준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차 (최초가입)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총보수 (기타비용 제외)	연 2.25%	연 2.07%	연 1.93%	연 1.81%	연 1.71%

다만, 판매회사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종류 A, A-e, C-e, C-W, C-F 수익증권은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 기준
	종류A	종류A-e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W	종류C-F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없음								납입 시
환매수수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W	종류 C-F	
집합투자업자 보수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0.700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보수	1.000	0.800	1.500	1.320	1.180	1.060	0.960	주6)	-	0.030	

신탁업자 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부 또는 전부 해지 시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0.020	
총 보수	1.750	1.550	2.250	2.070	1.930	1.810	1.710	1.890	0.750	0.780	
기타비용	0.014	0.015	0.015	0.006	-	-	-	0.014	-	-	발생 시
총 보수·비용비율	1.764	1.565	2.265	2.076	1.930	1.810	1.710	1.904	0.750	0.780	
증권 거래비용	0.502	0.495	0.881	0.493	0.234	-	-	0.49	-	-	발생 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또는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주 3) 증권 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 4)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 외에 증권 일괄 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주 5) C-e의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기간	보수(%)
2011.10.25 ~ 2012.10.24	연 1.080
2012.10.25 ~ 2013.10.24	연 1.020
2013.10.25 ~	연 0.960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 원)

구분	가입 시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50	230	617	1,045	2,314
종류 A-e	50	210	553	932	2,058
종류 C1	-	232	662	1,064	2,156
종류 C-e	-	195	616	1,079	2,456
종류 C-W	-	78	247	433	986
종류 C-F	-	81	257	450	1,025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 주3) 수익증권 종류별로 총보수·비용 비율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다음과 같으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A와 C1 : 1년

##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투자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과세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 상장주권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권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권배당, 비상장주권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 수익증권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ai.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매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종류 A-e	온라인(Online) 가입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종류 C1	가입제한 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종류 C- e	온라인(On-Line) 가입자
종류 C-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를 보유한 가입자
종류 C- F	① 집합투자기구 ② 전문투자자로서 50억 이상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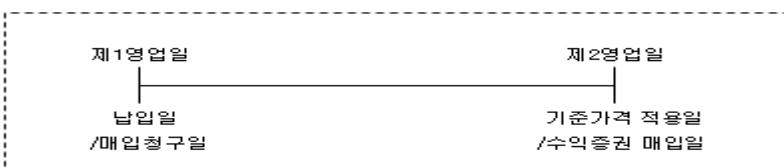
주1)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 3)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 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3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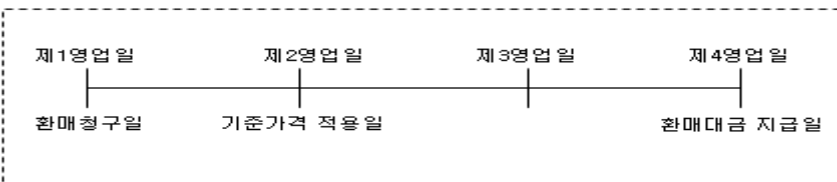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 및 종류 A-e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0.5%입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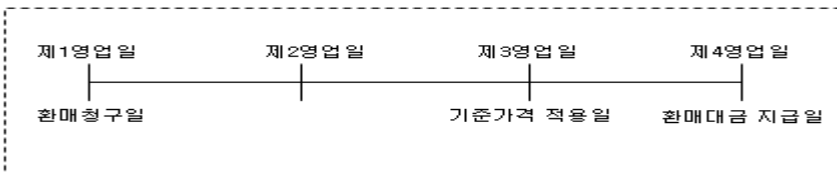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 시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부과되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 A 및 A-e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규약 제 25-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단,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 (지급시기)
종류 A/A-e	없음	-
종류 C1/C-e/C-W/C-F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1) 전체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 5 기 2011.01.16	제 4 기 2010.01.16	제 3 기 2009.01.16
운용자산	49,965,091,463	16,806,073,396	1,186,371,166
유가증권	46,301,848,490	15,939,443,940	1,039,309,25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3,242,973	16,629,456	147,061,916
기타 운용자산	3,600,000,000	850,000,000	0

기타자산	1,199,239,356	1,430,110,472	12,899,388
자산총계	51,164,330,819	18,236,183,868	1,199,270,55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0,156,485,321	1,670,161,048	43,645,058
부채총계	30,156,485,321	1,670,161,048	43,645,058
원본	21,007,845,498	10,296,500,516	1,551,955,003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0	6,269,522,304	-396,329,507
자본총계	21,007,845,498	16,566,022,820	1,155,625,496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4 기 2009.01.17. ~ 2010.01.16	제 4 기 2009.01.17. ~ 2010.01.16	제 3 기 2008.01.17. ~2009.01.16
운용수익	10,898,581,957	5,772,666,562	16,522,957
이자수익	36,614,404	20,826,858	1,292,509
배당수익	410,536,747	114,567,200	13,233,480
매매/평가차익(손)	10,447,967,437	5,637,127,809	1,996,968
기타수익	3,463,369	144,695	0
운용비용	3,480,009	8,882,909	7,508,214
관련회사보수	0	7,245,348	4,456,034
매매수수료	452,408	251,069	5,649
기타비용	3,027,601	1,386,492	3,046,531
당기순이익	10,895,101,948	5,763,783,653	9,014,743
매매회전율	237.25	368.41	725.94